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361 |
|--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22
발 의 자 : 채명지의원 외 1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(2007.5.11 공포·시행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(2007. 10. 4 공포·시행)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-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·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비(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)지급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2조” 를 “제33조”로,
동법시행령 “제15조” 를 “제33조”로 하고(안 제1조)
- 나.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 변경(안 제3조, 별표 2)
 - “1,612,000원” 을 “1,747,600원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
- 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예산안 반영
- 다. 개정조례안 : 별첨
- 라. 신·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2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하고, 동법시행령 “제15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한다.

【별표 2】 월정수당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란의 금액 “1,612,000원”을 “1,747,6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【별표 2】의 개정규정에 의한 것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별표 2】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월 정 수 당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,612,000원</td></tr> </table> | 월 정 수 당 | 1,612,000원 |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33조</u>----- <u>제33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별표 2】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월 정 수 당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,747,600원</td></tr> </table> | 월 정 수 당 | 1,747,600원 |
| 월 정 수 당 | | | | | |
| 1,612,000원 | | | | | |
| 월 정 수 당 | | | | | |
| 1,747,600원 | | | | | |

관 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墳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【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】

-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-

서명날인서

| 의원명 | 서명 | 날인 |
|-----|-----|-----|
| 채명지 | 채명지 | 채명지 |
| 방종영 | 방종영 | 방종영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